

영국판례

전에 유죄판결을 받은 사보가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액 감경을 위한 참작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Goody v. Odhams Press Ltd.
(1964) G. No.2133

사실개요

1963. 8. 8. 우편열차로부터 250 만파운드 이상이 도난 당한 대규모 열차강도사건이 일어났다. 1964. 3. 26. 원고인 「Douglas Cordon Goody」는 Aylesbury 순회법원에서 흥기를 소지한 채 일행과 공모하여 Frank Dewhurst 를 습격하고 120 개의 우편가방을 강취한 죄로 징역 30 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후에 항소하였으나 1964. 7. 9. 기각되었다. 위 형사재판의 제 1 심 판결시부터 4 개월 후인 1964. 7. 26. 피고인 「People」이라는 신문은 한 교외의 주부가 어떻게 그녀가 우편강도들이 강취한 우편가방을 가지고 도주하는 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아니 되었는가를 폭로하는 기사를 실었는데, 그 기사에는 「현재 우편물을 습격한 죄로 징역 30 년의 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에 있는 사람」이 그 강도단을 지휘 하던 사랑이 라고 묘사하여 위 강도범이 원고임을 시사하는 내용의 글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2 달 후인 1964. 9. 17.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기사는 원고의 인격과 신용, 평판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원고로 하여금 일반인의 모멸과 조롱, 악평의 대상으로 놓이게 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처음에는 피고가 실은 위 기사는 모두 진실되고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보도행위는 완전히 정당하다고 항변하였다가, 이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판사보가 허가를 하지 아니하자 이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한 결과 1966. 5. 11. 제 1 심 판사인 Cantley 판사의 허가로 당초의 위 항변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는데, 처음 항변의 6 번째의 문장 중의 말들을 모두삭제하고 대신 1964. 3. 26. 자 원고에 대한 위 유죄판결과 주문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 하면서, 「원고가 징역 30 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그 후 그의 항소가 기각된 한에 있어서는 우편강도범이 원고임을 시사하는 위 기사부분은 진실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보도행위는 정당하다」고 항변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피고는 위 항변의 8 번째의 문장을 및 붙여서 「원고는 위 기사가 보도된 1964. 7. 26. 당시 이미 강도 및 절도범으로서 악평을 받고 있었으므로, 설사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배상액은 감경 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가 위 악평을 받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로서 1948. 1. 20. 경부터 1964. 3. 26 까지 사이에 원고가 받았던 7 개의 형사 유죄판결들과 위 1964. 3. 26. 자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가 1964. 7. 9. 형사항소법원에서 기각된 판결을 내세웠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그 항변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 위 Cantley 판사의 처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원고 대리인의 주장

우선 피고의 위 정당성 항변의 변경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위 변경신청은 *Hollington v. F. Hawthorn and Co. Ltd.* 사건의 판례에서 선언된 법리에 따르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명예훼손사실 전체에 대하여 정당함을 주장하던가, 그 명예훼손사실이 여러 개로 나질 수 있을 때에는 그 각각의 명예훼손사실에 대하여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열차 강도범이었고, 그가 위 강도죄로 징역 30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아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는 두 개의 분리 가능한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두 부분은 분리 가능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오로지 원고가 열차강도라는 1 개의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을 뿐이다. 다음, 손해배상액의 감경 문제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대하여는 *Scott v. Sampson* 사건에서 확립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즉,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배상액감경사유로서 원고가 나쁜 평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그 악평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증거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고, 특정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나쁜 평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반적인 악평을 입증하는 것에 의하여서만 가능하다. *Plato Films Ltd. v. Speidel*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가 선언되었다. 거기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만약 개별적인 특정한 예를 들어 손해배상액을 감경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그 각각의 특정한 사실의 진위를 다투기 위하여 각 그 사실에 대하여 별도의 재판들이 다시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의 유죄판결, 즉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일어난 우연한 하나의 사건이 손해배상액의 감경 사유로 허용된다면 매우 이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원고가 그 전과 사실의 유무를 확인 받기 위하여 증인석에 앉은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피고 대리인의 주장

우선,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열차강도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명백히 이 사건 기사 중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분리가 가능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전과사실들을 들어 이 사건 정당성의 항변을 일부 정정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 다음, 손해배상액의 감경문제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위 유죄판결들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Scott v. Sampson* 사건은 전과사실을 다루고 있는 판례가 아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오직 피고가 정당성의 항변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저지른 개개의 특정한 비위사실을 손해배상액의 감경 사유로 참작할 수는 없고, 다만 원고가 일반적으로 악평을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만이 가능하다고 판시 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전과사실들은 원고가 저지른 특정한 비위행위가 아니라, 그 평판에 대한 일반인의 표현방법 내지 형법 각 본 조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적 행위로서, 그들 나름대로 독자적인 사항에 속한다. 지금까지의 어떠한 판례도 전과사실을 문제 삼은 바는 없었다. 만약 이 전과사실이 손해배상액의 감경 사유로도 참작될 수 없다면 이는 상식에도 반하는 일이 될 것이다. 피고가 내세우고 있는 원고의 전과사실들은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재판

도중에 다시 재판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증거로서 제출하는 것을 배제하는 법리의 근거를 잘 음미해 보면, 위 배제되는 증거 중에는 유죄판결을 받은 증거는 포함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DENNING 수석법관의 견해

피고는 처음에는 완전한 정당성의 항변을 제출하였었다. 이것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실제로 열차강도이고, 실제로 유죄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가 열차강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 이유는 피고가 제출한 유죄판결은 증거가 될 수는 없고, 심지어 추정된 증거자료 조차도 될 수 없다는 이상한 법리 때문이다. 위 법리는 Hollington v. F. Hewhorn and Co. Ltd. 사건에서 결정되었다 나 자신은 그 사건에서 유죄판결은 유죄의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였고, 다른 법원구성 법관들에게도 그와 같은 주장에 동조하게끔 설득하였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위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법원은 위 판례에 기속되어있다. 그리하여 어느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출판물로 발간하는 사람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소추당 할 위험성에 빠지게 되어 있다. 그 손해배상소송에서 그는 유죄판결을 유죄의 증거로 제출할 수가 없다. 할 수만 있다면, 그는 원고가 유죄라는 것을 처음부터 다시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자 이 사건 피고는 당초의 항변을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즉, 피고는 완전한 정당성의 항변을 철회하고 대신 부분적인 정당성의 항변을 제출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액의 감경주장을 하게 되었다.

먼저 부분적인 정당성의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기사중의 다음과 같은 부분, 즉 「지금 현재 대부분의 강도들은 교도소내에 수감되어 있고, 원고(그는 그 강도범행으로 징역 30년의 형을 살고 있다)를 비롯한 그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는 부분에 한하여는 진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위 주장의 구체화를 위하여 위 Aylesbury 법원에서 받은 유죄판결을 제출하였다. 원고측 대리인은 위 주장부분은 나머지 피고의 기사와 분리될 수가 없고, 따라서 위 정당성 항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부분은 분리가 가능하고, 부분적인 정당성의 항변은 전적으로 허용될 만하다. 그리고 위 항변 아래서 피고는 위 유죄판결을 증거로 제출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다음 손해배상액의 감경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우선 원고가 절도와 폭력을 좋아하는 강도로서의 나쁜 평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은 손해배상액 감경사유로 충분히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다. 그리고 추가하여 피고는 1948년경부터 원고가 받은 유죄판결들을 증거로서 제출하려 하고 있다. 이들 속에는 원고가 1948년 3월경에 강도죄로 받은 21개월의 징역형 등과 1964년 3월에 받은 「대열차 강도」 사건으로 인한 유죄판결을 위시한 그 밖의 많은 유죄판결들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 대리인은 이들 유죄판결들은 손해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참작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Scott v Sampson 사건에서 결정되고, Plato Films Ltd. v. Speidel 사건을 통하여 상원에서 지지된 법리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 사건들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감경 사유로서는 일반적인 악평의 증거는 제출할 수가 있으나, 특정한 비위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 대리인은 이 사건의 유죄판결들은 모두 특정한 비위사실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오직 경찰관을 증언대에 세워 원고가 폭력을 좋아하는 나쁜 평판을 받고 있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하게 하여야 하고, 그가 전에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고측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는 전의 유죄판결이 증거로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비길데 없는 완전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다. 그 유죄판결들은 모든 나쁜 평판의 자료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다. 그들은 공개된 법정에서 형성되었고, 공지의 사실인 것이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원고의 평판과 지위에 대한 가장 좋은 지침으로서 사람들에게 의하여 받아들여진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물론 원고의 생애 중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한 유죄판결이어야 하고, 그의 현재의 평판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적절한 기간 안에 발생한 관련성이 있는 것들이어야 한다. 그러나 관련성이 있는 한 그들은 증거로서 채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전에 원고가 일으킨 어떤 특정한 비위사실들과는 크게 다르다. 왜냐하면 위 비위사실들은 법의 심판대에서 엄밀하게 조사된 바가 없고,

따라서 유죄판결이 선고될 정도에 이른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위사실들을 증거로서 끌어 들이다가는 또다시 끊임없는 분쟁 속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반면에 유죄판결들은 다시 논의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한편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주어지는 손해배상은 인격과 평판의 침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그의 전과사실보다도 그의 인격과 평판에 대한 좋은 길잡이는 찾아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제 1 심판사가 손해배상의 감경 사유로서 이러한 유죄판결들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은 매우 옳은 처사라 할 것이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SALMON 판사의 견해

이 법원은 여하들 위 Speidel's 판례에 기소되어 있으나, 위 판례에서 상원은 결코 전에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손해배상액 감경에 있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다. 위 Speidel's 사건에서 상원은 Scott v. Sampson 사건을 따라 원고가 좋은 평판을 받고 있지 못하더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손해배상액 감경사유를 입증함에 있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위하여 내세우려고 애쓰는 증거는 그와 같이 성격 지워질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의 위 증거는 원고가 좋은 평판을 갖고 있지 못하였으리라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라, 실제로 원고가 나쁜 평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되고 있다. 결국 수석법관이 말한 것과 같이 형사법정은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고, 판결은 일반에게 공개된 속에서 선고되며, 그로써 피고인은 일종의 악명을 얻게 된다. 자기를 아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않은 채 폭력 또는 사기 등의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행운아라 할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 6년 동안 6번이나 그러한 절도나 폭력 등의 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도 세인으로부터 악평을 얻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유죄판결들을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도둑 또는 폭력배로 평가되고 있는 사실은 오직 풍문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일 뿐이다. 그가 그러한

죄로 형사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내 생각으로는 그의 나쁜 평판을 입증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될 것이고, 이것이 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한가지 덧붙일 것은, 이 사건에서의 우리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 유죄판결의 증거가 항상 손해배상의 감경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는 점이다.

모든 것이 사안의 성질과 판결을 받은 날짜에 좌우된다. 현재 이 사건에 있어서 유죄판결들은 모두 최근의 것들이며, 또한 명예훼손으로 비난받고 있는 위 기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이와 달리 사안에 따라서는 예컨대, 유죄판결이 오래전에 선고된 것이고 문제된 사건과 관련도 없어서 손해배상액의 감경에 있어서 그와 같은 판결들을 받은 사실을 참작하는 것은 현저하게 정의에 반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